

「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7. 6. 20. 제정 판 (시행 2017. 7. 1.) → 2020. 8. 6. 개정 판 (시행 2020. 9. 1.)

바뀜 3 · 신설 1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82/compare?from=692&to=1018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5:18:2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·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,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·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,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·관리와 ‘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’를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·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-08-06>
<신 설>	제2조(2 (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의 업무)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①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적인 관리·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②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수입, 지출 및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3호에 따른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전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(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)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·저활용·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/개발/임차)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제3조(기능)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0-08-06>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(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)에 상정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·저활용·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 연구 장비의 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/개발/임차) 검토 및 결정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 연구시설·장비의 심의, 도입, 구축, 관리 등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-08-06> ⑩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-08-06>

현행	개정안
	1. 통합관리 계정 단위의 설정 및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·장비 운영현황에 대한 '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의거한 검토 및 조정 2. 기관 지원금과 시설·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한 검토 및 결정 3.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검토 및 결정 4. 통합관리 계정의 적립금액 및 이자의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따른 적립 여부와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.	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.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예산팀장, 공통기기실험실 담당자로 하며,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,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-08-06>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20-08-06>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⑤ <삭제 2020-08-06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·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,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·관리와 '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'를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·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2 (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의 업무)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①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자체적인 관리·감독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③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의 수입, 지출 및 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- ④ 제3호에 따른 자체 연구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그 밖에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,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
 - ②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(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)에 상정
 - ③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
 - ④ 3천만 원 이상의 유휴·저활용·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
 - ⑤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
 - ⑥ 연구 장비의 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/개발/임차) 검토 및 결정
 - ⑦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
 - ⑧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⑨ 연구시설·장비의 심의, 도입, 구축, 관리 등에 관한 사항
 - ⑩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
1. 통합관리 계정 단위의 설정 및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·장비 운영현황에 대한 '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의거한 검토 및 조정
 2. 기관 지원금과 시설·장비 이용료 수입 등의 추가 적립에 관한 검토 및 결정
 3. 통합관리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검토 및 결정
 4. 통합관리 계정의 적립금액 및 이자의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 지침에 따른 적립 여부와 용도에 맞는 사용 여부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점검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.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연구처장, 산학협력단장, 예산팀장, 공통기기실험실 담당자로 하며,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,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- ⑤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